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복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6. 11. .
발 의 자	김복자의원 외 9명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복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1 . .

발 의 자 : 김복자, 김상조, 김인배, 김태근, 박세진,
안장환,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한성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결산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안 제7조제1항)
 - 현행 결산검사 사항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은 추가하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은 삭제하며,
- 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안 제7조제2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으로,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미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승락”을 “승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64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위원이”를 “대표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감사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제7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위원간”을 “위원 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를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라”로, “개시일로 부터”를 “개시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여비는[별표]에 의하여”를 “여비는 별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 운영 등----- -----.
제2조(위원의 정수) <u>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u>	제2조(위원의 정수) <u>구미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u>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u>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u>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 ----- 다만, 위원 중 1명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 ----- ----- 승낙----- -----. ③ ----- -----

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략)

② 구미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② (생략)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제64조에 따른다.

④ -----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은 -----.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 대표위원이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채무제표
4. 성과보고서

<신 설>

5. (생 략)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제8조(검사협조) -----

----- 없으면 -----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 제84조제3항
에 따른 -----

---. ----- 위원 간-----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

② (생 략)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
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
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
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
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
함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
는 여비는[별표]에 의하여 지급
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
비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 제4
조제2항에 따라 -----
----- 개시
일로부터 -----
-----.

--.

② -----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
-----.

제13조(지급기준) -----
-- 여비는 별표에 따라 -----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4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